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1

발의연월일: 2020. 7. 28.

발 의 자:양향자・이용빈・신정훈

박성준 • 전혜숙 • 고용진

성일종・양정숙・이은주

김민석 · 윤재갑 · 홍성국

김형동 • 이원택 • 조오섭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를 지원하거나, 종래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공공임대주 택에 대한 관리비 지원 정책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맡기기보 다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5(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청소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0조의5(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반관리비 및 청소 등 공
	공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
	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